

의안검토보고

의안 번호	제 42 호		
건 명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서초구청장	제안(출)년월일	1998.12. 5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김 재 근		

1. 검토내용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등 혈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골자

- 별정직 동장의 임용규정 삭제(안 제2조)
-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제도 규정 삭제(안 제7조)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6개월이상”에서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이상”으로 개정(안 제9조)
- 휴직에 따른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안 제10조)
-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조항 신설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 예산조치 : 불필요
- 합의
 - 행정자치부 자제12200-379('98.10.19) 기구·정원관련조례·규칙모델표준안
 - 서울특별시지방행정조직운영지침('98.10.21)에 합의
-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2항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 기타 :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2. 검토결과

□ '98. 9.19 법률 제5,568호로 개정한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에 의거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구분 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 주요골자는

- 안 제2조의 별정직 동장임용규정을 삭제
- 안 제7조의 별정직 근무상한연령 연장제도 삭제
- 안 제9조제1호의 신체·정신적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6개월이상”에서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 이상으로 개정”함.
- 안 제10조제2호의 휴직강행규정은 임의규정으로 완화
- 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신설하여 휴직기간 및 효력조항 신설

□ 검토의견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의하면 별정직공무원, 전문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 행정자치부 운영12100-451호 및 서울특별시 인사12100-2328호에 의거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에 규정된 휴직의 효력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동법 제66조 정년 단축규정과 동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이 개정 또는 신설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과 서초구지방별정직인사조례의 관련조문을 보완 또는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동 조례 제4조제3항 별표1의 5 위험물취급분야 직명 및 업무 구분란중 “가스계장”을 “가스담당업무주사”로 하고 별표1의 6 행정관리분야 직급란중 6급 상당“(진홍계장)”을“(진홍업무담당 주사)”로 함께 개정할 것을 건의함.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법 : 제2조제4항, 제63조(휴직), 제64조(휴직기간), 제65조(휴직의 효력), 제66조(정년), 부칙 제3조(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 지방자치법 : 제102조
-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5조

《관 계 법 령》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63조(휴직)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66. 4.30)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삭제(78·12·6)
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4~5. 생략

제6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78·12·6, 81·4·20, 94·12·22, 97·12·13)

1.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6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채용기간으로 한다.
3.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4. 제6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5. 제63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6.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7. 제63조제2항제4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8. 제6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전란개전 66·4·30)

제65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81·4·20)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된다. (개정81·4·20)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1급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 - 60세

6급이하 공무원 - 57세

2. 생략.

부칙 제3조(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종전의 제66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8년12월31일인 자와 1999년 6월30일인 자는 각각 해당 일자에, 1999년12월31일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6조제4항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정년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

-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설치운영에 있어서는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